

호주의 'Buy Now Pay Later'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규제 정비 움직임

요약

BNPL(Buy Now Pay Later: 선구매 후결제)은 무이자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할부구매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Afterpay는 호주의 대표적인 BNPL업체 중의 하나로서, 고객에게 연체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한편, 가맹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Afterpay를 비롯한 BNPL 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주중앙은행(RBA)은 BNPL 서비스가 가맹점에게는 고비용의 결제수단임을 지적하였으며,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호주 상원 또한 BNPL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호주금융산업협회(AFIA)는 이상의 논의에 부응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개요) BNPL(Buy Now Pay Later: 선구매 후결제)은 무이자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할부구매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
- BNPL은 업체가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고, 고객은 해당 금액을 카드 등을 통해 일정간격으로 분할하여 업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할부구매와 유사한 기능 제공
- 호주는 BNPL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서 Afterpay, Zip 등 다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년 기준 전체 소비의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¹⁾

1) Afterpay, 'Attachment A: Afterpay submission to RBA'('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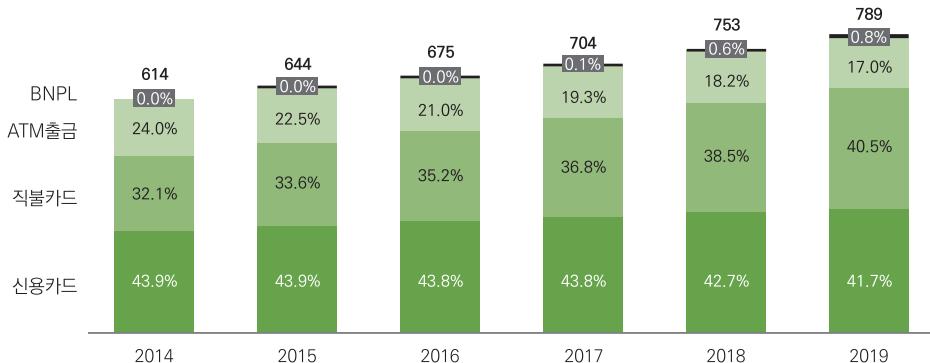
* 여신금융연구소 장명현 연구원 02-2011-0674/julianminci@crefi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여신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²⁾에 따르면, 월별 거래규모는 '16.4월 5,600만 AUD(약 445억원)에서, '18.6월 3억4,600만AUD(약 2,752억원)로 약 6.2배 성장

호주 지급수단별 이용비중 추이

단위 : 10억AUD



주: 1) 회계연도(이전연도 7월 ~ 당해연도 6월) 기준

2) ATM출금을 현금이용의 대리변수로 사용

자료: Afterpay

- (Afterpay) Afterpay는 호주의 대표적인 BNPL업체 중의 하나로서, 고객에게 연체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한편, 가맹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운영

- Afterpay의 가맹점수수료율은 3~6% 수준³⁾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수료별 수익 비중은 가맹점수수료 75%, 연체수수료 25%로 조사⁴⁾
- Afterpay의 BNPL 서비스는 최대 신용공여 기간이 8주로 짧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까닭에 호주 국가신용법(National Credit Law) 상의 각종 규제 및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

2)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은 금융상품 공시, 영업행위 관련 규정 제정, 검사 및 제재,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3) Afterpay 측이 밝힌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4%

4) ASIC, 'Review of buy now pay after arrangements', Report 600('18.11.)

- 신용공여 기간이 62일 이내이며, 수수료가 5%를 넘지 않고 연이율이 2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가신용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록 조회 등을 통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계정에 연결된 직불/신용카드에 대한 사전승인 등을 통해 지불능력을 파악하며, 고객의 사용이력에 따라 이용한도를 확대부여
- 최근 미국과 영국에 진출한 Afterpay는 '19년 전세계 이용규모가 52.5억 AUD(약 4.2조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실적
 - '19.6월 기준 가맹점 3.2만개, 이용자 460만명(호주 및 뉴질랜드 280만명, 미국 180만명)을 확보하는 등 젊은 층⁵⁾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
- (ASIC) ASIC는 BNPL 서비스가 국가신용법을 비롯한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적절한 소비자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규제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장
 - ASIC는 '18년 보고서⁶⁾에서, 비록 BNPL 서비스가 국가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ASIC법 상 한도여신(credit facility)의 일종으로서 ASIC가 보유한 상품개입권(product intervention power)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BNPL 서비스는 일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초과약정(over-commitment)의 위험이 상존하고, 잠재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계약사항이 존재함을 지적
 - '19.4월 호주 의회를 통과한 재무부 법률 수정안(Treasury Laws Amendment)은 금융서비스업체에게 '설계 및 배포 의무'를 부과하고, ASIC의 상품개입권 확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는 상술한 ASIC의 입장이 반영된

5) 시장조사기관 Roy Morgan에 따르면 호주 Afterpay 이용자의 55.9%는 34세 이하의 젊은 층
6) ASIC, 위의 글.

것으로 해석⁷⁾

- (RBA)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BNPL 서비스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가맹점에게는 고비용의 결제수단임을 지적하였으며,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또한 존재함을 언급

○ RBA 결제시스템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는 ’19.11월 공개한 보고서⁸⁾에서, 주요 BNPL 업체들이 소비자에게는 무이자로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에게서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을 지적

- 그러나 BNPL 업체의 수수료율은 약 3~6% 수준으로 카드 대비 매우 높으며, 카드사에게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 관련 규제를 벗어나서 사업을 영위

○ 또한 최근 공개된 RBA의 내부문서(‘19.3월 작성)에서는 BNPL 서비스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관련 사업자들이 소비자대출 관련 법에서의 ‘차이(gaps)’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서술⁹⁾

- (호주 상원) 호주 상원은 경제참조위원회, 금융·규제기술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BNPL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호주 상원 경제참조위원회¹⁰⁾는 ‘19.2월 공개한 최종보고서¹¹⁾에서 ASIC와의 협력 하에 BNPL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조언

- ‘규제 차이(regulatory gap)’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¹²⁾하고, 유사한 리스크

7) SmartCompany, ‘Afterpay, Zip to face stronger regulation as ASIC welcomes new intervention power’(‘19.4.8.)

8) RBA (2019d), ‘Review of Retail Payments Regulation: Issues Paper’, November, viewed 16 December 2019.

9) The Australian, ‘Reserve Bank memo warned of buy now, pay later dangers’(‘20.1.15.)

10)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11)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Credit and hardship: report of the Senate inquiry into credit and financial products targeted at Australians at risk of financial hardship’, February 2019.

12)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regulatory gap should be filled.

를 가진 타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및 소비자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규제 당국의 역할임을 강조

- 또한 위원회는 규제체계 확립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

- 1) 신용공여에 앞서 서비스제공자가 소비자의 재정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것
- 2) 소비자가 내부 및 외부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3) 서비스제공자가 이행곤란조항(hardship provision)을 제공할 것
- 4) BNPL 서비스는 적절한 가격에 정당한 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공할 것
- 5)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의 조항 및 조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안내받을 것

○ 호주 상원 금융·규제기술 특별위원회¹³⁾는 '19.11월 공개한 주제보고서¹⁴⁾에서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수준을 적용받지 않는 핀테크 서비스의 예시로 BNPL 서비스를 언급

- 핀테크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수준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AIFA) 호주금융산업협회(The Australian Financial Industry Association)는 금융당국 및 국회의 논의에 대응하고자 'BNPL 자율규약' 제정을 추진 중

○ AIFA는 '20.1월 'BNPL 자율규약(Buy Now Pay Later Code of Practice)' 초안을 공개하고 6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¹⁵⁾

- Afterpay를 비롯한 주요 BNPL업체 6개사가 모두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13) Senate Select Committee on Financial Technology and Regulatory Technology. '20.10월 첫 개회일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 종료 예정.

14) Senate Select Committee on Financial Technology and Regulatory Technology, 'Issues Paper', September 2019.

15) AIFA, 'AIFA releases Draft Buy Now Pay Later Code of Practice for public consultation' (20.1.29.)

자율규약의 목적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의 구매수단 선택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

- AIFA는 BNPL업체들이 이미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자율규약 제정을 통해 기존 법령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세부사항으로는 고객의 상품적합성에 대한 사전평가 의무화, 초과약정 방지, 호주금융분쟁조정국(AFCA)¹⁶⁾ 가입을 통한 외부 분쟁조정 절차 보장 등을 제시

16)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는 기존의 금융분쟁심판원(SCT)과 퇴직연금분쟁심판원(SCT)을 통합하여 2018년 11월 설립된 금융서비스 분야의 분쟁해결기관